

2022 년 국가인권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9 년 이래 김씨 일가가 지배해 온 권위주의 국가이다. 2011 년 김정일의 사망 이래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9 년 3 월의 선거는 자유 선거 또는 공정 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

주요 국내 보위 기관으로는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보위국이 있다. 이들 기관 간 권력 및 책임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권력이 한 곳으로 예측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북한 당국은 보위 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위 기관 소속 관리들이 수많은 학대를 자행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는 북한 정부에 의한 불법적 혹은 임의적 살인, 강제 실종, 북한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가혹하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여건의 구금 시설, 자의적 체포와 구금, 정치범과 정치적 피구금자, 해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초국경적 탄압, 사법 독립 부재, 임의적 또는 불법적 사생활 침해, 범죄 혐의자의 가족에 대한 연좌 처벌, 검열 및 탄압을 통해 표현과 언론을 국가가 전면 통제,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제약,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극심한 제약, 국내 이동·거주의 자유 및 출국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정치 참여에 대한 극심한 제약, 심각한 정부 부패, 독립적인 국내 인권 단체 설립 금지 및 국제 인권 단체에 대한 접근권 전면 거부, 젠더 기반(gender-based) 폭력에 대한 수사 및 책임의 부재, 재생산 보건(reproductive health) 접근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강제 낙태와 강제 불임을 비롯한 중대한 장애 요소, 인신매매, 독립적 노조의 불법화, 최악의 형태를 띠는 아동 노동 등이 포함된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외국인의 거주와 방문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었으며 탈북자의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보의 국외 유출이 더욱 제약되었다. 북한 정부가 인권 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다. 반부패 공식 캠페인의 징후가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모든 층위에서 부패가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인권 유린 및 부패에 대한 처벌 부재는 지속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이다.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임의적 생명 박탈과 여타 불법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북한 정부 또는 정부 요원이 임의적, 불법적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다. 북한 정부에는 제대로 된 수사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정치범, 반정부인사,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정부 관리 및 기타 범죄 피의자들을 처형한 사례가 있다. 북한은 법으로 가장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에 대해 유죄 확정 즉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정변이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목적의 테러 행위, 탈북 또는 국가 기밀 전달을 비롯한 반역행위, 다른 나라에서는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사회·정치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기만적인 파괴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절도, 군사시설·국유재산 파손, 마약 유통, 위조, 사기, 납치, 포르노물 유통, 인신매매 등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한 범죄에 대해서도 북한 법률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와 언론의 보고에 따르면, 정치범 또는 장애인이거나, 정부 관리나 교도관에 의해 강간을 당했거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산모를 대상으로 영아 살해 또는 강제 낙태가 자행된 사례가 있다. 다수의 수감자가 고문, 질병, 굶주림, 비바람에 노출, 또는 상기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한국) 내외 비정부기구(NGO) 및 언론에 따르면 무단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은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 처형될 수 있고, 정치범 수용소 간수들 역시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처형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비정부기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WJG)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84명으로 구성된 부표본(subsample) 중 83%가 생애 중 공개 처형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 학습 차 공개 처형에 참석했다고 보고한 탈북자도 있었다.

한국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탈북한 이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매년 발간하는 <2021년 북한인권백서>(이하 “백서”)는 공개 및 비밀 처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언들을 수록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처형의 목적이 마약 거래나 한국 영상물 시청 및 배포,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증언에 따르면 성경을 소지하거나 반체제 선전 자료 배포, 미신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형이 이루어졌다. 통일연구원은 공개 처형의 빈도가 최근 몇 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지난 2020년 제정된 북한의 “반동적” 외국 매체 유포 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형이 이뤄진 것을 비롯해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한

남성이 한국산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던 중 이웃 감시대(neighborhood watch unit)에 적발된 후 2021년 4월 강원도 원산에서 공개 총살형에 처해진 사례를 인용한 바 있다. 2022년 10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외국 정보를 접한 이를 대상으로 사형을 포함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년 “반동사상” 금지법과 같이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 12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WJG)은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연구 보고서에서 탈북자 인터뷰 및 양강도 혜산 지역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지방 비행장, 중국 접경지대 및 주거 지역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공개 처형을 진행하고, 처형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참석한 군중들의 녹음 장비 소지 여부를 감시하는 국가 전략이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6년 간 진행된 이 연구는 또한 “북한 내에서 은밀한 처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다수의 인터뷰 참가자들의 진술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경 출입 폐쇄를 유지했다. 당해 연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 및 제7군단 병력이 중국 접경지대에 대규모로 배치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지대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진입자를 “사살”하라는 내용으로 2020년 하달된 명령을 계속 시행함에 따라 접경지대 배치군이 발포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021년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러한 명령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언론 및 비정부기구 소식통에 의하면 2022년 6월과 7월 북수의 중국 접경 도(道)에서 강을 건너 중국으로 월경을 시도하던 가족들에게 발포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2022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강을 건너 중국으로 월경하던 중 북한 국경경비대원에게 발각되어 총에 맞았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한 바 있다. 10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자”를 겨냥한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살 정책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 성명과 관련된 후속 조사에 나섰다. 11월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과도하며 불필요한 코로나19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 주민을 더욱 억압하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경 간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식품 및 의약품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해 연말 기준 북한 정부는 당국에 의해 부당하고 근거 없이 억류된 뒤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오토 뮌비어의 사망 관련 정황을 여전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b. 실종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언론 보도는 북한 정부가 실종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언론은 북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납치하여 강제 송환하기 위해 국가보위성 요원들을

북한 국경 인근의 중국 도시로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한국에 정착한 뒤 중국을 방문한 탈북자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의 가족에게 탈북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설득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0-80 년대에 북한 정부가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12 명의 행방에 대한 조사는 당해 연도에 진전이 없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 일본인은 지난 9월 현재 873명이다.

한국 정부와 언론 보도는 1970~80년대에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도 타국민들을 납치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한국 전쟁 이후 516명의 한국 민간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어 아직 귀환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비정부기구들은 한국 전쟁 중 북한 정부가 민간인 2만 명을 납치했고 이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당국은 실종자의 행방 확인을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기타 관련 학대

북한 법률은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소식통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비정부기구 보고서는 구금 시설에서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고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보고된 고문·학대의 방법으로는 혹독한 구타, 전기 충격, 비바람에 장시간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 노출과 같은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좁은 “형벌실”에서 최장 수 주 간 감금,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무릎을 꿇거나 앉아 있도록 강요, 손목으로 몸무게를 지탱한 상태로 매달아 놓기, 물고문, 앉았다 일어서기 또는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쓰러질 때까지 반복하도록 강요 등이 있었다. (제1절 a.도 참조할 것)

북한 법률은 경범죄 등에 대한 처벌로서 노동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에서는 중국으로의 무단 월경에 대해 최장 1년형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형은 일반적으로 가혹한 여건 하에서 행해졌으며, 건설 또는 벌목 등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7절 b.도 참조할 것)

세계변호사협회(IBA) 전쟁범죄위원회와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다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 6월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정부가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비인도적 구금 환경, 고의적 기아를 취조·통제·처벌의 수단으로서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에 기록된 수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학대로는 영아 살해 및 강제 낙태, 불충분한 식량

배급, 처벌로 부과되는 연명하기 힘든 수준의 식량 배급, 빈번한 구타, 강간, 육체적 고통 유발 자세(stress position), 아동 노동, 하루 15~16시간의 교대 근무, 동상을 유발하는 불충분한 난방, 곤충 감염, 화장실 시설 부족 등이 있었다. 목격자들은 출국 시도 또는 종교 활동 참여를 이유로 체포된 수감자들이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발표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WJG)의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연구 보고서는 처형 직전의 피의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피의자의 존엄성 부정과 대중에 대한 경고 목적의 폭력 사용,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고문·처형·시신 모독 등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는 공개 성명, 희생자의 가족이 처형을 지켜보도록 강요당한 사례를 묘사하는 증언을 담고 있다.

교도관들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6월 세계변호사협회(IBA)/북한인권위원회(HRNK) 보고서는 ‘오승오(5cm x 5cm)각자’라는 각목이 “구금 시설 내 고문용 표준 지급 무기”라는 전문가 증언을 인용했다. 함경북도 구류시설에 수감되었던 한 피해자는 감방 창살 가까이로 기어오도록 강요당했고, 그 후 “가해자가 팔을 창살 사이로 집어넣고 몽둥이로 수감자(피해자)의 배를 반복적으로 때렸다”고 증언했다. 해당 시설의 또 다른 수감자는 “그들이 내 팔다리를 매달고 몽둥이로 나를 때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형벌은 ‘비행기 고문’이라 일컬어진다.”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시설에서는 국가보위성 관리들이 피해자의 감방에 들어가 수감자를 발로 차고 몽둥이로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감방 바닥에 피해자의 피가 고여 웅덩이가 생길 지경까지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료 처치가 행해지지 않았다.”

지난 몇 년 간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시설 내에서) 강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도관 및 기타 관리들에 대한 처벌이 부재하고, 이들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기 때문이다. 한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20 북한인권 백서>에 따르면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당국이 여성을 남성과 분리된 공간에 수감하고, 여성에게 빈번한 성적 학대를 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동 백서는 강제 송환된 여성 탈북자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구금시설과 감옥에서 훨씬 더 심각한 성적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 수감자를 여성 교도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 기준과는 달리, 남성 교도관이 감독을 거의 전담했다는 여성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서 생존자들은 구류시설(집결소)과 미결 구금·취조시설(구류장)에서뿐 아니라 시설 간 이송 과정에서 비밀 경찰 또는 경찰 취조관에 의한 광범위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재판 전 미결수 구금·취조시설에 여성 교도관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전직 교도관의 증언을 보고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2020년 보고서 <짐승보다 못한: 북한 미결구금시설에서의 학대와 정당한 절차의 위반>는 북한의 미결 구금 제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폭력적이며 정당한 절차가 전적으로 부재하다고 밝혔다. 미결 피구금자들은 가혹한 여건을 겪었으며, 조직적인 고문·성폭력,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여건, 강제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전해진다.

보위 기관 소속 관리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차별 행위를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감옥 및 구금시설 실태

식량 부족, 극심한 과밀 수용, 신체적 학대, 불충분한 위생 여건과 의료 처치로 인해 감옥 내 환경은 가혹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다. 북한 정부는 강제 노동수용소와 정치범수용소 등 다양한 유형의 감옥, 구금시설,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관리소(정치적 처벌 목적의 노동수용소), 교화소(교정 및 교화 시설), 교양소(노동 개조 시설), 집결소(경범죄자 집단 시설), 노동단련대(노동 교육장), 구류장 또는 감옥(취조 시설 또는 감옥) 등 여섯 종류의 구금 시설이 있다.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에 의하면, 국가보위성이 관리소를 관리하고 국가보위성 혹은 사회안전성이 여타 구금 시설들을 관리한다.

당해 년도 말 기준으로 북한 정부는 처마봉 통제구역과 관리소 제14 호, 제15 호, 제16 호, 제18 호, 제25 호 등 6 개의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 당국이 제15호 및 제18호 관리소를 폐쇄 또는 규모를 축소했다가 추후 재개설하였으며, 제15호 관리소의 경우 이전보다 확장했다는 징후가 있다. 또한 회령 소재 제22호 관리소는 폐쇄했다. 탈북자들은 관리소 내에 이름 없는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역의 관리소에 수용된 인원의 수에 대한 다양한 외부 추산치가 있으며 80,000명으로 추정하는 단체가 있는 한편, 200,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하는 단체도 있다.

관리소는 종신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과 석방이 가능한 “혁명화” 혹은 교화 구역으로 구성된다. 북한 정부에 적대적이라고 국가가 판단하거나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 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경우, 가족의 일원이 혐의가 있거나 체포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모두 구금했다.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수의 증가로 인해 그 가족 전체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기가 어려워지자 아동의 경우 수용소에서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동 백서에는 가족 중 자녀는 석방되고 부모만이 구금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는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비정치적 범죄 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 시설에 보내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킨 사례도 흔히 있었다고 전해진다.

임시 코로나19 격리 시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혹한 격리 제한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 지난 6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코로나19 환자 가족이 격리된 상태에서 굶어 죽은 사례가 발생하자 북한 정부가 격리된 가족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도록 이웃 주민들에게 강요했지만 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어머니가 격리로 인해 집을 비운 동안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한 당국이 '자원봉사단'을 조직한 중국 접경지대 평안북도 의주군의 한 소식통은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남편이 집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3살짜리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RFA에 전했다. 지난 8월 RFA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로 가족들이 부족한 배급량을 보충하기 위한 여분의 음식을 전달하지 못해 두 곳의 교도소 시설에서 최소 35명의 여성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폭력과 고문을 당했다는 피구금자 및 수감자의 보고가 계속되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일부 구금 시설에서 음식이나 의료적 치료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다. 세계변호사협회(IBA)/북한인권위원회(HRNK)의 6월 연구는 혜산 국가보위성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목격자가 그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 "대부분 옥수수나 감자 껍질에 돌과 석탄을 섞은 것"이었다고 증언했다고 보고했다. 위생 상태는 열악했으며, 노동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감 기간 동안 옷을 갈아입지 못했으며 목욕이나 세탁도 거의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국 언론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노동교화소에 수천 명의 정치범, 경제사범, 일반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2020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발표한 <북한의 장기 노동수용소 제1호 교화소(개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곳 이상의 교화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 보고서는 여러 인공위성 사진 분석에 의거, 평안남도 개천 인근의 제1호 교화소 수감자 인원이 2,000~6,000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인권위원회(HNRK)가 2020년 공개한 또 다른 보고서는 제12호 교화소(전거리)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당해 교화소에 정치범과 비정치범이 모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HNRK에 따르면, 여러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회령시 인근의 제12호 교화소에 약 5,000명이 수감되어 있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중국으로 불법 월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RNK 보고서는 제12호 교화소 내에서 부상, 질병, 교도관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수감자의 시신을 은밀하게 처리하기 위한 화장장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증언도 수록했다.

제8호 교화소(승호리)를 다룬 HNRK의 2021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평양에서 동쪽으로 약 16마일 떨어져 있으며, 수감자 2,000명이 이곳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있다. HNRK는 위성 사진을 통해 해당 교화소의 시설 중 두 곳이 그곳으로 직통 연결되는 “많이 이용된 흔적”이 있는 6곳의 소규모 광산에서 1,200피트 이내에 있으며, 이는 수감자들이 채광 작업에 이용되었다는 “강력한 징후”임을 확인했다. 해당 교화소의 전(前) 수감자 한 명은 채굴장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수용소 바닥 일부가 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으며, 하루는 중국으로 수출할 인형 속눈썹을 연결하는 수출 부서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해당 부서의 여성들이 바닥의 뜨거운 부분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5분도 되지 않아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고 HNRK에 증언했다. 해당 수감자는 자신이 수감된 기간 중 5~6명의 수감자가 더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전했다

제3호 교화소(토성리)에 관해 다룬 HNRK의 2021년 11월 보고서는 위성 사진과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을 통해 수감자들이 “농업 생산과 의류, 자전거 등 일부 경공업 부문에서 강제 노동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각각 다른 규모의 세 무리로 추정되는 수감자들이 교도소 정문 밖과 인근 지원 구역에 대형을 이루고 있으며” “다수의 곡물 더미로 보이는 것”이 수감자들 바로 옆에 쌓여 있는 모습이 담긴 2021년 3월 위성 사진을 수록하여, 인근 농경지 작업에 수감자들이 이용되었다는 증언을 뒷받침했다. HRNK 사무총장은 동 교화소의 위치(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신의주시)가 “북한의 비공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불법 국경 무역 측면과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이 택하는 이동 경로 측면에서 모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 정부가 “코로나 예방을 구실로” 시장과 탈북 시도를 모두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범수용소 제14호에 관한 2021년 12월 보고서에서 HRNK는 해당 수용소 전체가 수감자 석방이 불가능한 “전면 통제구역”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농경지, 과수원, 가축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목과 목공에 강제 동원되는 한편으로, 경공업 시설과 광산에 파견되어 강제 노동에 종사하기도 했다. 동 보고서는 수감자들이 일상적으로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며, 식량 배급도 제한적이었다는 여러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을 인용했다.

가혹한 물리적 여건: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에 따르면 수용소 내 영양, 위생, 의료 여건은 끔찍한 수준이다. 수감 중 발생한 사망 건수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즉결 처형, 고문, 적절한 치료 부족,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이 흔한 실정이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의 보고서는 굶주림과 방치, 고된 강제 노동, 질병, 처형에 따른 “수감 중 극도로 높은 사망률”을 언급했다.

세계변호사협회(IBA)/북한인권위원회(HRNK)의 6월 보고서는 다양한 유형의 구금 시설에 갇힌 수감자들이 극심한 더위와 추위 속에서 건설·농업·벌목·광업 등 산업에서 하루 최장 16시간 동안 강제 노동에 종사했다는 증언을 인용했다. 목격자들은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수감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식량 배급량이 줄어드는 처벌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영양실조나 과로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구금 수용소 내의 아동 노동에 관한 지난 몇 년 간의 증언을 인용했으며, 육체적으로 힘든 산업 분야에서 하루 최장 12시간의 아동 노동이 이뤄진 사례도 일부 있었다. 정치범들은 일반 수감자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 가혹행위에 관한 신뢰할 만한 주장이 제기된 경우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청리 노동교화소에서의 장기 노동교화에 관한 2019년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 특히 군 및 내부 보위기관 관계자들이 수용소에서의 활동에 대한 위장·은폐 조치를 취했다.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면회인을 적절히 접견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인 수감자들은 여타 수감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구금시설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 수용 당국에 적발된 수감자들이 실종된 사례가 2016년 보고되었다.

독립적 감시: 북한 정부는 교도소 실태 점검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불허했다. 또한 여타 인권 조사관들의 교도소 및 구치소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 법률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탈북자, 언론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북한 법률은 기소 및 재판 기간 동안 구금을 제한하고 영장에 따른 체포를 규정하고 자백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위 기관원들은 정치적 범죄의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체포하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하였다고 전해진다.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사회안전성은 검찰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부패를 우회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진다. 한 비정부기구는 법적으로 조사관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최장 2개월 간 개인을 구금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는 국가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 조직이 용의자들을 수개월 간 지속적으로 심문했다고 보고했다. 재판이 있을 때까지 보석

또는 석방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을 북한 정부가 마음대로 구금, 수감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키는 데 대한 제약은 없다.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관련인들은 사실상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전해진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피구금자의 체포·구금·형량에 대해 가족들은 통보받지 못한다. 구속적부심 혹은 항소 제도는 법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에서 채택한 의견서에 따르면, 정치적 죄목으로 수감된 피구금자의 가족은 피구금자의 석방을 청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데 이는 국가가 이와 같은 정치범 옹호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가족의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구금자의 변호인 접근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자의적 체포: 자의적 체포가 이뤄진다는 보고가 있다. 2022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견해, 사회적 배경, 또는 민간 시장 활동 참여를 이유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자의적 체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 대한민국 입국 시도, 종교 활동 참여, 외국 매체의 시청·배포 등을 이유로 자의적인 체포가 흔하게 발생했다.

6명의 대한민국 국민(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9년 간이나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e. 공정한 공개 재판 받을 권리 없음

북한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법원)은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의하면, 수사 혹은 예비 심문 단계와 구금 시설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에 의한 뇌물 수수와 부패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2020년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에서 재판 전 구금시설 내 미결수들의 처우가 대개 연출과 재력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 보고서에 따르면, “수감자 중 대다수는 재판 없이 혹은 국제법에 규정된 절차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재판에 근거하여 투옥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구금의 희생자들이다.”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는 탈북자 증언을 인용하여 정치범 수용소 수감 여부는 재판에 상관없이 국가보위성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재판 절차

공식적인 형사 소송 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입수할 수 없는 실정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은 교통 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국한되었다. 2020년 “반동사상” 금지법 위반 등의 범죄에 관한 공개 재판이 이뤄진 사례도 때에 따라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2절 a.도 참조할 것)

북한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 절차상의 보호 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헌법에 의하면 피소자(피고인)의 변호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재판을 열고 변호인을 배정한 경우, 해당 변호인이 피고인을 능동적으로 또는 적정하게 변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특히 중범죄에 관한 공개 재판 시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비정치범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북한 정부가 비정치범에 국한하여 재판과 국선변호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위성이 모든 정치적 사건에서 “사전 심리”나 예비 조사를 수행하지만 재판은 법원에 의해 이뤄진다. 일부 탈북자들은 국가보위성도 재판을 수행한다고 증언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는 탈북자 증언을 인용하여 정치범 수용소 수감 여부는 재판에 상관없이 국가보위성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당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징후는 없었다.

정치범 및 정치적 피구금자

정치범과 정치적 피구금자의 전체 규모에 관한 결정적 정보는 입수 불가능하지만, 대다수의 외부 추산에 따르면 80,000~12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 수감자 대부분이 종신형에 처해 있으며 수감자의 3대 가족이 포함된 경우도 다수 있다. 비정부기구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기타 수감자 및 피구금자들보다 처벌은 더 가혹하게, 보호는 더 미약하게 받았다.

2021년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현 정치 제도와 국가 지도층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이들(“기독교도와 교류하거나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로커 또는 인신매매범이나 한국에 가려고 시도한 이들을 포함한다”)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적절한 식량, 깨끗한 물 및 위생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비인도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많은 경우 고문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구타를 포함한 학대를 당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OHCHR은 정치범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며 그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와 소재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는 정권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2022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나라가 어렵다거나 상황이 나쁘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김정은이나 정권이나 정치에 대해 말을 하면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다. 관리소에 간다는 뜻이다”라는 탈북자의 증언을 수록했다. 과거 보고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탈북 시도나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 일원과의 연락,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전해진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일반” 재소자들은 실제로 “국제법과 양립될 수 있는 실체적 이유 없이 구금된” 정치범들이었다.

해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초국경적 탄압

북한은 국경 외부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초국경적 탄압을 자행했다.

국외 지역에서의 살인, 납치, 강제 송환, 또는 기타 폭력 또는 폭력 위협: 북한 요원들은 해외 북한 주민 수색 및 강제 송환을 지속했으며, 일부 경우 외국 정부와 협력하거나 외국 정부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아래 양자 간 압력 부분을 참조할 것).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북한 납치 요원들은 중국 활동에 초점을 맞춰,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운 대한민국 시민을 납치했으며 “중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2021년 2월 언론은 지난 5년 간 42명의 탈북자가 실종되었다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성명과 함께, 일부 사례의 경우 북한 국가보위성의 “납치 또는 기타 부정행위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한 탈북자의 관측을 보도했다.

지난 2월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7월 북한의 통제를 피해 탈출한 북한 군사정보기술 장교 최금철의 사례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모스크바 사무소에 망명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근무지를 떠났다. 2021년 9월 최씨는 자신의 탈출을 돕던 활동가에게 러시아 경찰 제복을 입은 남성 5명이 인근 마을 라즈돌노예(Razdolnoe)에 있는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2021년 12월, 이 활동가는 최금철이 강제 송환을 앞둔 탈북자 2명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0년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러시아 내의 난민과 이주민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시민지원위원회(Civic Assistance Committee)는 2016년 러시아와 북한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합법화했다”고 보고했다. 시민지원위원회는 최금철과 마찬가지로 “탈북자 사냥의 새로운 물결”을 통해 체포된 다른 두 명의 망명 신청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위협, 괴롭힘, 감시, 강요: 북한 정부는 탈북자 및 기타 외부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고 위협하려고 시도했다. 2018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탈북자 가족들에게 더 큰 압력을 가해 탈북자의 귀국을 압박하도록 국가 기관에 지시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귀국을 종용하는 연락을 했으며, 이는 북한 정부 당국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탈북자들은 2020년에 북한 정부발로 추정되는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2021년 5월, 한국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 국가보위성을 도운 혐의로 북한 공작원 송춘선(일명 송모)을 체포했다. 송씨는 약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며 북한 탈북자들에게 재입북하여 북한 정권의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라고 겁박했다는 내용의 자백을 했다. 2016년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북한 친척 송금을 돕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송씨는 국가보위성 위장 요원으로 일하라는 압박을 받다가 2년 후 스스로 한국으로 탈출한 것처럼 꾸몄다고 알려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 비밀경찰 요원 연철남에게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 지인 한 명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시인했으며, 연철남이 자신의 남편이며 북한의 가족들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 친척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화번호가 노출된 탈북자의 의도치 않은 도움을 통해, 연철남은 남한에 있는 다른 탈북자 3명을 찾아내 북한 친척과 연결해 주었고 그 중 한 명을 회유하여 재입북하도록 했으며, 이후 북한 정부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텔레비전에 출연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 송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북한은 또한 해외 주재 외교관과 기타 관리들에게 압박을 넣어, 금전적 요구와 기타 제약을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협을 가했다. 2021년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을 중단한 이후 중국 주재 북한 무역 대표관들은 중국에서 소득 없이 발이 묶인 상태였음에도 북한 정부는 이들이 부업을 통해 영리 추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등 임시 일자리를 구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과 단둥의 북한 무역 노동자들은 두 지역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과 통역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올해 초 RFA는 북한이 매년 4월 15일 정권 수립자 김일성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을 앞두고 빈곤 상태에 놓인 해외무역일꾼들에게 “충성자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2022년 6월 해외 언론은 북한 정부가 라오스에 파견한 북한 의료진에게 “충성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구받은 금액을 송금한 후 북한 의료진에게는 빈약한 수준의 수입만이 남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 차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했다. 2021년 6월 RFA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근무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든 후에도 “충성자금”을 계속 상납해 왔던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북한 당국이 평양의 주택 부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5만 채의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자 충성자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명령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하급 당 간부와 보안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을 받으며 위험한 일에 종사하여 번 돈의 대부분을 이미 충성자금으로 바치고 있는데 거기에다 평양시 주택 건설 지원금까지 추가로 바치라니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전했다.

주민 이동 통제 시도: 북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과 기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이는 현지 당국의 공모로 이뤄졌으며, 북한 국가보위성의 방식과 요원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유엔 제재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강제 노동 사용을 포함한 북한 노동자 고용 관행을 이어갔다. 2021년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는 강제 노동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지는 조건에서 일하도록 착취를 당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2년 4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자들이 노동자와 간부의 탈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여권을 회수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보도했다.

2020년 가디언지(誌)는 북한의 압록강 맞은편에 소재한 중국 단둥 공장에서 수백 명의 북한 주민(대부분 여성)이 강제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격리 가운과 보호 작업복 등 품목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은 수출용 개인 보호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 최대 18시간씩, 휴일도 없이 상시적 감시 아래 일했다. 임금의 약 70%는 북한 공장 관리자들이 북한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지는 “중국 공장은 저렴한 순응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북한 정권은 그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챙기는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이었다”고 보도했다. 2021년 기간 중 단둥과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에 대한 징후가 계속되자, 한 외국 정부는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며 단둥 화양방직복장유한공사(Dandong Huayang Textiles and Garments Company) 제품의 수입을 차단했으며, 캐나다의 한 대형 여성 의류 소매업체는 비슷한 이유로 해당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단절했다. 2022년 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주요 도시가 코로나19로 봉쇄된 가운데 북한 노동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 5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브랜드 리닝(Li-Ning)의 운동복을 생산하는 단둥 인근 공장에서 600~7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다시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없이 고강도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국인 노동자가 동일 노동을 한다면 받게 되는 임금의 40~45% 정도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에 앞선 지난 3월, 한 외국 정부는 공장의 강제 노동 사용을 이유로 리닝 제품 수입의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12월 데일리NK는 북한의 국경 폐쇄로 인해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북한 노동자들의 탈북 가능성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해 “점점 더 잔악한 감시와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은 불평·불만을 제기하거나 동향이 “수상하거나” “조국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노동자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상시화된 실태보고를 요구하는 지시를 내려 이들의 혐의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시에서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국가보위성에서 규정한 송환 절차”에 따라 북한으로 귀국시키도록 요구했다. 러시아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국가보위성에서 규정한 송환 절차”란 탈북 시도자의 다리를 꺾어 못 쓰게 만든 후 휠체어에 태워 귀국시킨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 탈북을 시도한 주경철 씨는 러시아에 들어온 국가보위성 체포조에게 체포 당한 후 아킬레스건에 상해를 입은 채 마취 상태에서 송환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전해진다.

지난 9월 북한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중국과 러시아에 공식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인권 박탈, 명령 및 통제 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나 단체 교섭의 자유가 없으며, 이동의 자유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 아무르주 연해주에서 별목공으로 일했던 북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불평 분자로 찍힌 자는 신속한 송환과 가혹한 처벌을 겪게 된다.” “그들은 노동자의 양쪽 다리에 석고 깁스를 채운 채 북한으로 송환한다. 깁스는 북한으로 월경한 이후 벗겨진다. 사소한 문제로 송환된 노동자는 귀가가 허락되지만, 중대한 문제인 경우 관리소로 보낸다.” 러시아에서 별목공으로 일했던 또 다른 북한 주민이 HRNK 보고서에 수록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건 및 안전 조치 위반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별목공의 작업장 사망률이 높으며, 특히 야간 별목공과 동절기 트럭 운전기사들이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별목공이 작업 중 사망하는 경우, 북한 당국은 연료비 절약을 위해, 관 10개를 트럭 한 대에 실을 수 있을 때까지 시신 송환을 수 개월 간 지연시켰다. “전직 트럭 운전사 한 명은 관 속에 얼어붙은 채 보관되었던 시신이 녹아내리면서 트럭에 실린 밀폐된 관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쌍무적 압력(Bilateral Pressure):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개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타국에 쌍무적 압력(bilateral pressure)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2021년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강제 송환이 이뤄지도록 타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송환된 주민들에게 보복 조치를 가해 억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성폭력 및 젠더 기반(gender-based) 폭력, 사형 조치 등의 처벌로 이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동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모든 국가가 재송환금지(nonrefoulement)라는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2019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윈난성, 허베이성, 지린성 및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최소 64명의 탈북 망명 신청자를 구금했다. 피구금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송환될 경우 고문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4월 데일리NK는 북한이 2020년 국경 간 무역을 차단한 이후 식량 부족으로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랴오닝성 단둥의 탈북자 구금시설이 만원 상태라고 보도했다.

2021년 7월,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반 송환 차단은 유지한 채 강제 송환을 위해 국경을 잠시 개방했을 때, 중국은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군인과 공군 조종사를 비롯해 탈북자 약 50명의 신병을 인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이 최소 1,170명의 탈북자를 계속 구금하고 있으며 이들은 강제 송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 탈북자를 송환하기로 북한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중국 국적자의 북한 배우자를 관대하게 대우해 왔으나, 최근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탈북자 체포”가 시작되었다. 활동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2021년 7월 송환된 탈북자들과 송환 위험에 처한 중국 내 다른 탈북자들이 북한 도착한 후 강제 노동, 투옥, 성폭력 또는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 11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이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히며 “송환 시 고문이나 기타 잔혹·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재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10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2,000 명에 달하는 북 이탈자”가 “불법 이주자”로 중국에 구금되어 있으며 북-중 국경 개방 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탈북자 송환 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다고 지적하며, “국경 재개방 전에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해결책을 긴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주재 북한 요원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나훗카, 하바롭스크, 우수리스크에서 탈출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수리스크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 경찰에 탈북 노동자 수배령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또 다른 소식통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다 작업 현장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하며 “북한 요원들에 의한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RFA는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 전에 충성심 심사를 받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해외 파견을 러시아 작업 현장에서

탈출하여 잠적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민사 절차 및 구제 제도

북한 헌법은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 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북한 주민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부 당국이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사회안전성이나 국가보위성은 작성자의 신원 파악에 들어가며 이들은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개인과 기관은 국내의 불리한 결정을 지역 인권 단체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북한 헌법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및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한다. 2019년 12월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보고서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이웃 감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인민반이라는 방대하고 다층적인 정보원 망을 이용해 정권 비판자나 정치범을 색출하고 있다. 2022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인민반 지도자들이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조선노동당(WPK) 관리들과 함께 “반국가 행위를 감시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집 내부를 점검한다”며 북한의 라디오에는 외국 방송 수신 장치가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기타 디지털 통신을 감시했다.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TV와 라디오는 북한 국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 채널과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으며, TV 및 라디오 다이얼 고정용 봉인의 훼손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열이 이뤄진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했고, 국제 전화회선은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해외 인사와 소통하거나, 외부 콘텐츠, 특히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체포 및 수감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외부 정보 유포 관련 727건, 외부 방송 청취 관련 315건, 통신 및 서신 검열 관련 507건의 구금 또는 사법적 처벌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민통일방송이 2019년에 발표한 최근 탈북자 2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75% 이상이 외국 콘텐츠를 시청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을 알고 있으며, 70% 이상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외국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국가보위성은 휴대전화 사용 및 전자 매체 접속을 실시간으로 엄격하게 감시했다. 북한 정부 당국은 중국 전화망을 통한 국제전화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접경지역에서 빈번하게 휴대전화 신호를 방해했다. 또한 중국 유심카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을 체포하여 벌금 또는 뇌물을 내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간첩 또는 기타 범죄 혐의를 씌우고 장기 수감 등 혹독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 북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서명 시스템”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기반 검열 프로그램을 북한 내 모든 휴대폰에 추가했다.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를 통한 외국 매체 시청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

국가보위성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체포권을 유지하고 특수 목적의 비군사적 수사를 진행하였다

북한 정부는 주민을 엄격한 충성도에 따른 계층, 즉 성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 교육, 거주지, 의료 시설, 특정 상점, 결혼 상대, 식량 배급에 대한 접근권이 결정된다. 개인과 가족의 성분이 양호한 경우 불법적 휴대전화 사용 및 외국, 특히 한국의 매체, TV 프로그램, 영화 시청에 대해 북한 당국이 더 관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2020년 신설된 “반동사상” 금지법으로 인해 이렇게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9상무(109그루빠)라는 명칭의 특수 조직이 “반동사상” 금지법 위반자 색출 및 체포 임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RFA는 109상무의 활동으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 영상 콘텐츠를 소지한 10명 이상의 군 고위 장교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거주지에서 퇴거 당한 가족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표현의 자유 (언론 및 기타 매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 포함)

북한 헌법은 북한 국민에게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2021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처벌로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의견과 다른 정치적 의견의 표현은 금지되어 있다. 북한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체포 당한 이들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한국 문화 토론이나 유포는 반체제적 행위로 표적이 된다. 북한 정부는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한국 문화 콘텐츠의 시청 및 유통, “괴뢰말투”(한국말투)로 말하거나 글 쓰는 행위를 단속했다. 한국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를 경우 노동교화형 2년, 한국의 영화·음반·출판물·서적·노래·그림·사진 등을 보거나 듣거나 보관할 경우 노동교화형 5~15년, 해당 자료를 수입 및 배포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진다.

2021년 4월 북한 당국은 한국 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한 남성을 강원도 원산에 모인 500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 총살형에 처했다. 2021년 5월 평안남도 남포의 남고생 2명과 여고생 4명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반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노동교화소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북한에 밀반입해 플래시 드라이브에 담아 판매한 함경북도의 한 남성이 총살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플래시 드라이브를 구입한 고등학생에게는 무기징역, 드라마를 시청한 다른 학생 6명에게는 5년의 노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학생들의 교장과 담임 교사는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검열 혹은 콘텐츠 제한 (언론 및 온라인 매체 등 기타 매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 포함):

북한 정부는 모든 국내 정보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기자들은 기사를 취재할 자유가 없으며 자유롭게 보도할 수 없다. 북한 정부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를 통해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책 출판,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했다.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었고, 공식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모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엘리트 계층 주민들과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들은 위성으로 외국 TV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북한 정부는 해외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지만,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보고서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 따르면 최근에는 외국 방송사 송수신기가 확산되어 당국의 전파 차단 노력을 압도할 정도라고 전해진다.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언론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방문이 금지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북한 정부가 외국인, 그 중에서도 언론인의 방북을 주의 깊게 관리했으며, 때에 따라 외국 언론인의 추방 또는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관리나 거리의 주민들에게 말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국가 안보: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들이 북한 정부나 김정은 비판을 비롯한 반국가 범죄 혐의로 구금되었으며, 일부의 경우 처형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인터넷 자유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되었다.

때에 따라 정부 직원들은 엄격한 감시 하에 제한적으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를 기록하고 삭제 불가능한 스크린샷을 무작위로 찍는다고 전해졌다.

2019년 12월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내 외국 콘텐츠 확산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에 파일 워터마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이 시스템은 매체 파일이 공유될 때마다 파일명 끝에 사용자 또는 기기 고유의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북한 당국은 불법 매체 저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무작위 검사를 시행했으며, “열람 이력”이라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기기 사용 이력을 추출 및 외부 전송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제한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했고 예술작품도 통제했다. 교육 과정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북한 정부는 학술 목적 여행을 심각히 제한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요 기능은 김씨 일가 개인 숭배와 북한 체제의 강화였다.

북한은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사상적 교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 행진, 군중 대회, 무대 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고,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북한 정부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

북한 헌법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했다.

결사의 자유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한 다른 조직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직업 관련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존재한다.

c. 종교의 자유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참조할 것: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d. 이동의 자유 및 출국의 권리

북한 헌법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국내 이동: 북한 정부는 합법적 국내 체류자들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행 규정 위반자는 경고나 벌금 혹은 강제 노동에 처해졌다. 북한 법률은 북한의 국내 여행 허가제 위반 시 재판 없이 최대 3개월 간 노동수용소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연구원 2021 년 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국내 여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해진다.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들에게 국내 유배(internal exile)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지난 7월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접경지역 양강도의 30가구가 그 가족들의 탈북 후 산악 오지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보도했다. (제2절 f. 국내 실향민 현황 및 처우도 참조할 것)

북한 정부는 식량 사정,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서의 거주 허가는 물론, 심지어 진입 허가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언론과 비정부기구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공포때문에 국내 이동 제한을 강화하여 2020년 3 월 이래로 국내 이동이 더욱 어려워졌다. 비정부기구, 외교관, 유엔 기구 관계자들은 최종 출국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양을 떠나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이미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던 외국 관측자들의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원조 상황 감시 활동이 더욱 어려움에 처했다.

해외여행: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학자, 근로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북한 정부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과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코로나 19 유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경 지역의 엄격한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허가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주민의 수가 대폭 제한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순찰 및 감시와 더불어, 뇌물을 받고 월경자에게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2022년 7월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근거한 출신 국가에서, 또는 출신 국가로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오랜 기간 침해”받아 온 북한의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차단 조치로 더욱 악화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법률은 탈북과 탈북 시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 또는 타국 망명 목적으로 월경하는 자(아동 포함)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심각한” 사안인 경우 망명 시도자는 무기징역과 강제 노동,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강제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수감되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에는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진술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 재정착한 주민을 비롯해 외국인, 종교 단체, 또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사람과 광범위한 접촉을 한 주민들이 특히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한국 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여 2022년 67명, 2021년에는 63명을 기록해 최근 2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반해 2019년에는 1,047명, 2020년에는 229명의 탈북자가 한국으로 입국했다.

탈북자들의 과거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수개월의 강제 노동형 혹은 단순 경고만을 받을 수도 있음)과 “정치적” 목적으로 거듭하여 월경하는 주민(때에 따라 보다 가혹한 처벌에 처해짐)을 구분하였다. 후자에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단체들과 접촉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 난민 보호

북한 정부는 국내 유민, 탈북자, 강제송환 탈북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우려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망명에 대한 접근성: 북한 법률은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에 관해 입수 가능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 등에 참가하지 않는다.

f. 국내 실향민 현황 및 처우

북한 주민들은 인권 침해(정부 정책에 의한 거주지 강제 이주)나 북한 정부의 자연재해 피해 방지 조치 부재로 인한 국내 실향(internal displacement)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정부의 국경 폐쇄 조치로 국제기구 직원들은 홍수로 실향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없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을 의도적으로 실향민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는 친척의 행위에 대한 집단적 연좌 처벌로서 여러 가족을 기존 거주지에서 강제로 몰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산악 지형과 광범위한 삼림 황폐화로 인해 빈번한 홍수와 산사태에 취약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조치 이전에도 북한 정부는 때에 따라 국제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들이 피해 지역과 실향의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국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북한의 거부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향민이 발생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심각한 홍수를 겪어 국가 농업 생산 계획에 차질을 겪었음에도, “국제사회의 외교적 개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국제 원조 제안을 거둬 거부했다.” 2021년과 2022년 폭우로 인한 광범위한 홍수로 북한 전역의 주택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나, 북한 정부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의 실향민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을 국제 구호 요원들의 북한 진입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폭우로 북한 전역에서 5,000명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홍수 발생 당시 한 유럽연합(EU) 당국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게 유럽연합 인도주의지원국(EU Humanitarian Aid Department)은 “지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그와 동시에 “엄격한 국경 통제 조치로 인해 인도적 지원 물품의 수입이나 인원의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동안”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 6월~8월 다시 내린 폭우로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한 홍수와 더불어 더 많은 실향민이 발생했다.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집단적 연좌 처벌로서 강제 이주를 시행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 조치로서 해당 가족 전체를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10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북자의 북한 내 친척들이 접경 지역에서 보다 내륙 지역으로 옮겨져 더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과 비정부기구 소식통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북한 여러 도의 당국은 가족 구성원 중 2명 이상 실종된 가구나 농촌 지역 거주에 자원하라는 요구를 회피한 청년들의 가족을 강제 이주시켰다. 지난 7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가족이 있는 북한 주민들이 농촌 오지로 추방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중앙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지칭을 기존의 “불법 월경자”에서 “괴뢰”로 변경한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북한 양강도 당국은 탈북한 가족이 2명 이상인 30가구를 색출해 삼수·갑산·풍서·풍산 등 산간 오지 마을로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 70대 부부는 손자 2명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이주 대상이 되었다. 이 밖에도 탈북한 아들이나 딸의 부모, 부모가 한국으로 탈출한 후 북한에 남겨진 자녀 등 다양한 주민이 이주 대상에 포함되었다.

북한 정부는 또한 의약품과 관련된 범법 행위에 대한 가족 연좌 처벌 수단으로도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지난 5월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한 후 사회안전성이 배포한 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포고는 정부 관계자 및 당국자 등에게 의약품을 훔치거나 의약품 및 그 원료를 암시장에 판매하거나 “가짜 또는 잘못된 약”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사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웹사이트 NK 뉴스에 따르면, 해당 포고는 위반자의 가족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위반자의 동거 가족은 이주 및 추방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이 장애인을 평양에서 추방하여 수용소 내에 격리하고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1년 10월 우려를 표명했다. (제6절. 장애인 부분도 참조할 것).

Section 3.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북한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은 2019 년이다. 해당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북한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율과 정부에서 미리 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100 퍼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및 정치 참여: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했다. 풀뿌리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여성과 소수자 단체의 참여: 북한 법률은 여성에게 평등한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지만, 정부 고위직에 선출 또는 임명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21년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급 조직 대표자 4,750명 중 여성의 비율은 약 10%로, 2016년 제7차 당대회 때의 8.6%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2020년 언론은 여성(박명순)이 북한 노동당의 최고위 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후보위원 겸 당중앙위원회 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2021년 10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다. 김여정은 노동당 정치국 소속이었으나, 2021년 1월 당대회 후 정치국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내 약 20개의 부서 및 사무국 중 여성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곳은 1개에 불과하다. 2014 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0 퍼센트에 그쳤다. 2022년 6월 최설희가 북한 최초의 여성 외무상으로 임명되었다.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정부 내 부패 및 투명성 부족

공직부패사건에 실제로 형사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가능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국제기구들은 고위관료들이 처벌받지 않고 부패행위에 관여한다고 대대적으로 보고했다.

부패: 부패는 북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보위기관 내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전해졌다.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는 사법부, 구금시설, 군, 국영 사업장을 비롯한 북한의 국가 기구 전반에 광범위한 부패가 있다고 보고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 북한> 보고서를 통해 부패한 경찰이 소규모 지방 시장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운영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상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 또한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 결근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투옥에 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영 사업장 감독관에게 뇌물을 준다고 보고했다.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관료집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도 북한의 부패를 보여주는 표지이다.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침해 의혹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시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협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다수의 단체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관측자들은 이러한 단체들이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 비정부기구와 다수의 국제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북한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 왔다. 북한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유엔 또는 기타 국제기구: 북한 정부는 인권 분야에서 유엔 대표들과의 협력을 거의 예외 없이 거부했다. 제네바 주재 유엔북한대표부는 2022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막고 그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2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해 국제기구와 외교관들의 북한 내 활동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그 결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 정보가 크게 감소했다. 동 보고서는 유엔이 증거를 통해

입증한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정부에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함께 “역량 개발과 기술 지원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정부는 지난 8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낸 방북 허용 요청 서한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9월 북한 관영 매체는 살몬 특별보고관의 조사 권한을 거부하고 그의 활동이 북한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2021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가해자 불처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마지막 북한 방문은 2017 년에 이루어졌다.

제6절. 차별과 사회적 학대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북한 법률은 여성 대상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 대상 강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강간을 범한 경우 최장 5 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해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 년 이상, 해당 강간이 “특별히 중대”하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다. 해당 법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2014 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 보고서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한 억압과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분위기로 인해 교도관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다른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를 강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 시도 후 복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나 결국 완전히 탈북에 성공한 여성들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해당 여성들은 복송 이후 구금되어 있을 당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2018 년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는 북한에 성폭력·젠더기반 폭력이 만연함을 밝히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 남성들이 2011~2015 년 자행한 성폭행 혹은 성행위 강요의 구체적 사례들을 인용했다. 강간 사건이 발각되더라도 가해자는 단순 면직에 그치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12월 HRW는 “북한의 여성과 여아들은 성폭력 및 젠더폭력 등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극심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2021년 12월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 여군들은 끊임없는 학대, 인위적 영양실조 유발, 잔인한 처벌, 성희롱,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 전직 여군은

북한인권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군대 내 여성의 70%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탈북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우려 사항으로 언급했다. 일례로, 2019년 탈북한 한 여성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인터뷰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가 개입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갈 만한 곳은 없다”고 진술했다. 통일연구원 2021 년 백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공히 북한이 이같은 폭력에 대한 보호 혹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들은 여성 대상 폭력이 가정 안팎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다. 다만 통일연구원 백서는 최근 여성의 경제력 강화로 가정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증언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보고가 계속되었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탈북자들은 법률 집행이 부족하고 정부 관리들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이 평범한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만큼 흔해졌다고 보고했다. 이와 동시에, 통일연구원 2021 년 백서에 따르면 “남존여비” 사고방식이 도시 지역,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비정부기구와 탈북자들은 국가보위 관리들이 여성, 특히 탈북 후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 복송된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낙태를 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6월 세계변호사협회(IBA)/북한인권위원회(HRNC)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중국 혼혈아 출산으로 이어질 임신을 강제 중단시키는 정책을 취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밝혀졌고”,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 대한 가혹한 처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 순수성이 “불순하다”고 간주되는 아이의 출산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공식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영아살해, 특히 구금시설 내 영아살해에 관한 보고도 있었다. (아동, 영아살해(장애아 대상 영아살해 포함) 부분도 참조할 것)

구금 상태의 취약한 여성과 더불어, 장애인도 재생산 보건(reproductive health)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적 처치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일례로,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는 왜소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이 시행되었다는 증언을 수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2020년 보고서는 탈북 후 강제 복송을 겪은 다수 여성의 증언을 담았다. 이들은

북한 송환 후 구류장에서 “자궁검사”, 즉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해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중략)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월경 건강(menstrual health)에 관한 2020년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월경은 사회적 낙인을 동반한다. 생리대는 구할 수 있었지만 많은 여성에게 여전히 비싼 가격이었으며, 대부분의 여성은 집에서 만든 재사용 가능한 천 생리대를 사용했다. 적절한 월경 위생의 결여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포용, 여행 및 업무 능력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 정부가 성폭력 생존자에게 어떠한 성 보건 및 재생산 보건 서비스(응급 피임 포함)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차별: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법률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노동당 또는 북한 정부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가정, 사회, 직업 구조 내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통일연구원은 식량을 확보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노동과 가사라는 이중 부담의 책임에 더하여 임금, 승진 및 배정된 업무 유형 상 차별이라는 형태로 여성차별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타인종/민족 대상 조직적 폭력 및 차별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규모 중국인 집단과 소수의 일본인이 있으나 총 규모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이며, 북한에는 소수 인종·민족 개인 또는 집단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없다.

프리덤하우스는 <2022년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중국인 집단의 경우 “교육과 취업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여행과 무역의 자유는 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북한 관리들이 중국계 혼혈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귀국한 여성들을 “불순한 자”로 취급할 뿐 아니라, 강제 낙태 또는 영아살해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인종적 비하를 일삼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6월 IBA/HRNK 연구는 구금 시설에서 이러한 관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증언을 인용했다. (아동, 영아살해(장애아 대상 영아살해 포함) 부분도 참조할 것)

아동

출생신고: 아동은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며, 일부의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의 출생을 통해 취득하기도 한다.

교육: 북한 법률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2 년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다수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제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일부 아동들은 비공식적 비용이나 식량부족으로 인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 완전통제구역 내의 아동들은 완전통제구역 외부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교과과정이나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

외국인 방문자들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5 학년부터 학교에서 매주 수 시간의 의무 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모든 어린이가 정치사상 교육을 받는다. 2019 년 보고서 <잃어버린 세대: 북한 아동의 건강과 인권, 1990~2018> 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C)는 북한 국가 교과과정의 특성이 정치사상교육과 정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강조하고, 교과과정에서 벗어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매우 드물었다. 북한 법률은 아동 대상 가정 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나, 당국이 이러한 가정 폭력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법률은 15 세 미만의 여성과 성교한 남성을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2008년 이래로 아동의 성적 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1명도 없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08~2015년 기간 중 몇 건의 아동 대상 성적 학대 사건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아동혼, 조혼 및 강제결혼: 혼인가능 최저연령은 남성 18 세, 여성 17 세이다.

아동 성착취: 합의된 성관계(consensual sex)가 가능한 최소 연령은 15세이다. 2014 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범들의 착취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으며, 이는 이들 소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이나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억압, 영양실조, 가난, 식량부족을 벗어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범들은 어린 소녀들에게 북한 내 다른 지역이나 중국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실제로는 이들을 착취하여 강제 결혼, 가사 노동 혹은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서울 소재 비정부기구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2019 년 11 월 발간한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에서는 북한 학교·가정·수용소·고아원·구금시설 내에 만연한 아동 학대(성적 학대 포함)에 관한 문헌적 증거를 담고 있다.

영아살해(장애아 대상 영아살해 포함): 2020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는 북한 내 영아 살해에 관해 기술했다. 6월 IBA/HRNC 보고서는 “구금 시설에서 영아 살해와 강제 낙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불순한’ 중국계 혼혈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을 인용했다. 임산부에게 분만 유도제를 주사하도록 강요당했다는 한 조산사는 해당 아이가 출생한 후 “한족(중국인)의 피가 섞인 아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모가 보는 앞에서 젖은 수건으로 질식당했다고 증언했다.

실향 아동: 비정부기구 보고에 의하면, 상당수의 길거리 아동이 존재한다. 2020년 HRNK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고아는 아니지만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에 의해 버려지거나 가정 내 학대로 인해 스스로 도망친 사례이다. 실향 아동들은 지역 시장이나 기차역 앞에서의 구걸이나 도둑질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 따르면 고아나 길거리 청소년들은 “돌격대”로 장기간·무보수 차출되는 등 아동 강제 노동에 취약한 상황이다. (제7절 c.도 참조할 것)

시설 내 아동: 다수의 아동이 고아원을 비롯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9년 북한인권위원회(HRNK)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고아원,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40개 아동보호시설을 현대화하여 이러한 아동들을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시설에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적절한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아동이 영양실조 및 건강 상태 악화를 겪었다. 고아원 생활 중 아동들은 하루에 한 끼만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식사를 놓고 경쟁하고 싸우게 되거나 생존을 위해 고아원을 탈출하기도 했다. 고아원에 사는 아동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응답자들은 아동들이 고아원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는 대신 돌을 나르는 등 “단순 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반유대주의

유대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를 참조할 것: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또는 성적 특성에 기인한 폭력행위, 범죄화, 기타 학대

범죄화: 동성 성인 간 합의된 성적 활동을 금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4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내 동성 간 합의된 성적 활동의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성 소수자(LGBTQI+ Persons) 대상 폭력: 경찰이나 기타 정부 기관이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간성(LGBTQI+)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또는 그러한 폭력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을 선동·자행·묵인·용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비국가 행위자의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입수할 수 없었다.

차별: 북한 법률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적 특성에 기인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북한 법률은 성소수자 개인, 커플 및 그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증오 범죄” 또는 반동성애 선전(antigay propaganda)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편견 기반 범죄(bias-motivated crime)의 기소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 사법 체계 또한 없다. 성소수자 권리단체인 이퀄덱스(Equaldex)에 따르면, 주거와 고용 차별로부터 성소수자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부기구들은 품위 및 음란물 관련 법률이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기인한 차별을 가하는데 법률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동성 커플의 입양은 불법이다.

법적 성별 정정(Legal Gender Recognition) 가능 여부: 이퀄덱스(Equaldex)는 북한 주민의 법적 성별 정정 권리에 관해 분명하지 않다(ambiguous)고 밝혔다. 법적 성별 정정 가능 여부에 관해 입수 가능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성소수자 (LGBTQI+)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발적 또는 강제적인 의료 또는 심리적 처치행위: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성별 특성을 바꾸기 위해 소위 ‘전환 요법’을 시행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성소수자 관련 주제를 비롯해 모든 사회적·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장애인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은 2017 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신축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에 신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정부 정보 및 안내 사항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북한 당국이 장애인을 평양에서 추방하여 수용소 내에 격리하고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장애인이 평양에서 추방되어 “다른 도시에 있는 제한 구역 또는 시설”에 격리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는 왜소증 장애인이 여전히 격리 구역에서 살고 있다는 증언이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북한 전역에서 이러한 정책이 균일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장애인은 공적 생활 접근성 측면에서 차별을 겪었다. 북한의 전통적 사회 규범에 따라 직장 내 차별을 비롯한 장애인 차별은 묵인되었다. 2021년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장애가 있는 아동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국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 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별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 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더불어, 장애 아동이 건강·교육·사회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 국가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최근 기준 2017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 2021년 백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북한의 특수 교육 제공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7절. 근로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로 교섭하거나 쟁의할 권한이 없다. 북한 정부가 설립하고 그 통제를 받는 노동단체를 제외한 기타 노동단체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 법률은 외국인 기업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업은 노조 활동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노조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 활동에 간섭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 헌법은 주민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권리가 실제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불법 집회 참가 시 노동교화형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등 다수의 국내 노동단체들을 직접 통제한다. 동맹 산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으나, 노동자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북한 정부는 업무배정 및 임금결정 등 공식 고용부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통제한다. 합작투자 기업 및 외국인 소유 회사는 정부의 점검을 거친 명단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을 관리위원회에 편입시키며, 위원회는 경영 의사결정 시 노동자들의 의견 제시 통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 강제 노동 혹은 의무 노동 금지

북한 법률은 강제 노동 혹은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해당 법률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이나 기타 과업에 주민을 동원했다. “노동교양”과 “노동교화”는 정치범 처벌에 흔히 활용되는 수단이며,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정치범의 경우 계속해서 벌목, 채굴, 작물재배 및 제조와 같은 강제 노동 및 의무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북한법은 노동가능 연령의 모든 주민이 일하고 “노동규율과 근로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농장 및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다수 있었다. 벽돌 제조, 시멘트 제조, 채탄, 채금, 벌목, 철 생산, 농업 및 섬유산업에서 강제 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광범위하고 제도화된 강제 노동 제도에 기대고 있으며”, “2020년 초 국경 차단 이후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제 노동에 기대는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보고했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추고 있는데, 주로 힘들고 위험한 노동에 강제로 투입된다. 교정 제도나 군 제도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돌격대’를 파견하거나 인민반이나 지역 단체, 학교 등을 통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구금된 이들이나 계급이 낮은 군 복무자, 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장기간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돌격대’ 단원은 특히 영양 실조와 굶주림에 취약하다”고 기술했다.

지난 5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제대로 작동하는 양수기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 여러 도의 당국자들이 사무원들에게 농작물에 물을 주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11월에는 북한 당국이 지난 2년 동안 7~8차례에 걸쳐 주로 빈곤가정 또는 고아 출신 청년들에게 탄광과 농장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마도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함경남도 함흥의 한 소식통은 지역 학교를 졸업한 70~80명의 고아 대부분이 “어려운 지역”으로 파견되었다고 말하며, 지난 한 달 동안 함경남도 전역에서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발전소, 축산 농장, 염소 목장 등에 보내졌다고 덧붙였다.

북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9년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체에 근무할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이 근로에 따른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액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2020년 양강도 혜산의 여성들은 정부 관리가 해당 지역 모든 여성들에게 건설 사업이나 기타 과업을 위해 매일 노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은 벌금을 내야 했고, 보위 당국은 과업 회피자를 체포했다. 2022년 9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여성과 여아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며, “여성 단체 및 학교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모든 기관은 할당량을 부여받는데,

여성과 아동이 물자나 노동력을 제공하여 부여된 할당량을 채운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유엔 보고서 <권리의 대가>는 “국가 제도를 벗어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필수적인 생존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려면 뇌물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북한 정부의 두려움 때문에 더욱 엄격한 국경 및 국내 여행 제한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비공식적 무역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기가 극도로 어려워졌다. 북한인권위원회의 2020년 제12호 교화소(전거리)에 대한 보고서에는 교도소 관리들이 인조 속눈썹 생산에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실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정부가 시, 군, 구역 단위 “노동단련대”를 운영하면서 단기간 동안 피수용자들에게 강도높은 노동을 강요하고 식량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상습적인 구타를 비롯한 학대를 자행한다고 보고했다. 북한 당국은 암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나 실직자를 이러한 노동단련대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밖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북한주민 대다수는 러시아와 중국에 있었다. 또한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니제르, 오만, 세네갈, 시에라리온, 시리아, 태국, UAE,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당해 연도 중 북한 노동자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돌려보낸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다수 국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노동허가 혹은 다른 서류를 발급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일하며 수입을 챙길 수 있도록 허락했다. 북한 국적자들이 위조된 신분증명 서류를 이용하여 수용국 당국의 신원 확인을 회피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북한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정부 보안요원의 지속적인 밀착 감시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루 평균 12~16 시간, 때에 따라 20 시간까지도 일하고 있으며, 휴일은 매월 1~2 일에 불과했다. 고용주들은 이들의 평균임금이 월 27~90만원(300~1,000 달러)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경우 고용 기업은 노동자의 급여를 북한 정부에 직접 지급하며, 정부가 총 수입의 70-90 퍼센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소득은 월 9만원(100 달러) 정도이다. 특정한 경우에는, 파견노동자가 3년 계약을 완료하고 귀국할 때까지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자들은 의류·건설·신발제조·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를 비롯해 별목·의료·제약·식당·해산물가공·섬유·조선 등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도 참조할 것: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c. 아동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연령

국가는 법에 따라 16 세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16~17 세의 청소년이 위험한 노동여건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법률은 강제 아동노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측자들은 해당 법률이 아동노동이 될 수 있는 최악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 강제 아동노동을 비롯한 아동노동 최악의 형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 관리들은 수천 명의 아동을 억류하고 부모와 함께 노동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북한 정부는 아동 노동 금지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법률 상으로는 아동 노동에 대해 유괴와 같은 유사한 중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북한 관리들은 때에 따라 취학 중인 아동들을 공장이나 농장에 단기간 배치하여 생산목표 달성, 또는 주요 도로 제설작업 등의 특별과제 완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들이 자신의 가족을 떠나 농업부문 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되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기간이 한 번에 한 달 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 년에 두 차례, 각 한 달씩 농장에서 무보수 강제 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HRW는 학교가 교원 급여와 학교시설 유지비를 조성하기 위해 최저 근로연령보다 어린 학생들도 일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2019 년 8 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14~15 세 학생들이 조선노동당의 아편농장 작업에 동원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 따르면 고아나 길거리 청소년들은 “돌격대”로 장기간·무보수 차출되는 등 아동 강제 노동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OHCHR은 16세~17세 아동이 해로운 노동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200,000명 이상의 청년동맹 관계자와 구성원이 “청년돌격대 활동”에 참여했다는 북한 관영언론의 2021년 8월 보도를 인용했다. 또한 중학교를 졸업한 고아 160여 명이 “수 년 간 돌봐 준 조선로동당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원해서 탄광과 공장으로 일을 나섰다고 전한 북한 관영언론의 2021년 5월 보도를 인용하며, OHCHR은 이러한 고아들이 그간의 돌봄에 “보답”하고자 자원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OHCHR은 “탄광과 같이 위대한 환경 하에서 18 세 미만 아동을 노동에 동원하는 것은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로 여겨지며 국제법 상 금지된다”고 밝혔다.

16~17 세 청소년들은 군대식 건설 돌격대에 10 년간 배치되어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했다. 강제 노동의 결과로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 상해, 영양실조, 탈진, 성장장애를 겪었다.

수용소 교도관들은 수용소 내 아동 또는 그 가족이 수용소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고문을 자행했다. 북한 당국은 수용소 내 아동에게 하루 최장 12 시간의 강제노동을 시켰으며 수용소 외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수용소 내 아동에게는 교육 접근권도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다.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

북한 법률은 모든 주민이 “국가의 모든 영역과 공적활동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노동 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종, 종교, 민족, 기타 요인에 기초한 고용이나 직업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북한 법률에는 고용차별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성분제도에 기초한 계급이 동등한 고용기회나 동등한 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 법률은 여성에게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적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노동법 및 국가 지시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 분리가 규정되어 있어 특정 직종을 여성에게 배정하면서 다른 성별은 해당 직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정년은 55 세인 반면 남성의 정년은 60 세로서, 이는 여성의 연금혜택, 경제적 자립, 결정권 있는 지위로의 승진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역시 고용차별을 겪었다.

e. 용인가능한 근로조건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법률:

북한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영기업이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때에 따라 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 법률은 1 일 8 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노동 시간은 더 길며, 이는 아마도 김일성·김정일 저서 의무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을 포함했기 때문인 것 같다. 지난 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공식 기업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화하는 선전 강연에 강제 참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법률은 매주 1 일의 휴일(일요일), 유급휴가, 공휴일, 공공 비용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와 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할 권리”를 모든 주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 대규모 행사와 그에 대비한 예행 연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므로 휴가나 휴식을 포기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공휴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작업반원들과 함께 “기념”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틀 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온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임금 체불이 흔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은 비공식 경제 또는 지하 경제에서 소득창출 활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북한 법률은 현대적·위생적 근로조건 제공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 법률은 인명피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노동안전 명령” 불이행을 처벌하고 있다. 다수의 탈북자들은 여러 산업 부문, 특히 광업 및 제조업을 비롯한 중공업 분야의 근로 여건이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스스로 이탈할 수 있도록 명시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많은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 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관리자들은 많은 경우 생산 할당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고, 교육 및 안전 요건을 무시하는 경우가 잦았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3월 평안남도 승리 자동차 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미훈련 10대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1년 3월에는 “폭풍 부대” 건설 돌격대 소속 노동자 중 최소 20명이 평양 작업장에서 전기 화재로 사망했다.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집행: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집행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일부 탈북자들은 광업과 군수 제조 분야에서 하루 15~16시간씩 일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전기나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인해)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 이하였거나 법률로 보장된 15일의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했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었다.

비공식 경제 부문:

북한에는 대규모의 비공식 경제 부문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나 구성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정규 임금과 배급이 충분하지 않아, 다수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비공식 경제에 의존한다. 비공식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 간 북한 정부가 이러한 비공식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 및 규제를 강화했다는 징후가 있다.

미주(尾註): 자료 출처 관련 주의사항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북한은 외국정부 대표, 언론인 또는 기타 내빈에게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 또는 보고된 인권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